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7차 정무위원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개인정보 열람 등 비용 부과기준 마련〉

■ 정준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792호)

2024. 11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: 개인정보 열람 등 비용 부과기준 마련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준호의원 등 12인
2. 제 안 일 : 2024. 9. 9.
3. 회 부 일 : 2024. 9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, 전송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함)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,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,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

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,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8조제3항).

Ⅲ. 검토의견: 개인정보 열람 등 비용 부과기준 마련

-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열람, 전송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 '열람등요구'¹⁾)를 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우송료의 기준을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, 제18조제3항).

현행	개정안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①· ② (생략)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)를 <u>청구할 수 있다</u> . 다만,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	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</u> <u>및 방법에</u> ----- -- <u>산정하여 청구할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열람,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, 제36조에 따른 정정·삭제,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·설명 등의 요구

□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.

○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²⁾은 수수료와 우송료(이하 ‘수수료 등’)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수수료등이 결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편차가 과도하거나, 실비의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됨.

○ 예를 들어, CCTV 영상의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의 가명처리를 하는데, 개인정보처리자가 모자이크

2)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

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. 다만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12.>

1.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
2.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
3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
*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대체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]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따르되,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 등)를 규정하고 있음. 【참고자료1】 수수료 예시: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

처리비용으로 과도한 금액을 산정·부과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의 열람등요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.

- 이에 개정안은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어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정보 열람등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 산정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【참고자료1】 수수료 예시: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

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(제3조 관련)

3.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	○ 열람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테이프 등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- 1컷마다 2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- 무료

		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(문서·도면·사진 등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 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GB마다 8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< 비 고 >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		

문 의 처
02)6788-5104